나. 심혈관계 질환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성별 여성

나이 37세

(직종) 조리보조원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는 2019년 6월 21일 □에 입사하여 약 1년 동안 △사업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보 조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 6월 1일(만 37세) 바닥 청소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대 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유족은 근로자가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청소약품과 세척제 사용으로 인한 화학물질과 음식 조리 흄 및 일산화 탄소 등의 유해가스에 노출되었고, 높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해 사 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020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0년 8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 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화경

△사업장 구내식당에서는 조리 및 급식 서비스를 위한 식자재 입고, 전처리/조리, 배 식, 설거지, 청소/정리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근무형태는 주간조(09:00~15:00) 5 명. 야간조(18:00~24:00) 6명으로, 주간조는 영양사(1명)와 조리사(1명), 조리보조원 (3명)으로 구성되며, 근로자는 주간조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조리보조 작 업은 식자재 정리, 설거지 및 전처리, 배식대 세팅/정리, 테이블 소독, 홀 정리 및 바닥청 소작업 등이며, 식사 및 휴식시간(13:30~14:00)을 제외하고 하루 5.5시간, 주 6일 근 무하였다. 근로자는 마스크와 장갑, 앞치마,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였다. 구내식당 조리 실 내부는 국소배기장치가 가동 중이었고, 공조시설에 의한 천장 급배기와 창문과 출 입문을 통해 자연환기가 가능한 구조였다. 에어컨은 홀에서 2대, 조리실에서 1대 사용 중이었다. 근로자 유가족 진술에 따르면, ㅁ 입사 전 근로자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진 행하거나. 세탁소 아르바이트로 세탁물 접수업무. 식당 서빙업무(2015.12~2016.9). 어 린이집에서 보조보육교사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I. 암외 질환
 나. 심혈관계 질환
 62
 63

3. 해부학적 분류

- 뇌심혈관 질환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20년 6월 1일(만 37세)에 오전 청소업무 및 중식 배식 등을 모두 마치고 조리업무를 하였으며,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의 급식실 에어컨 근처에 있는 테이블에 동료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식사를 하기 전 가슴통증과 오한을 호소하였다. 근로자는 동료가 준 약을 복용한 뒤 밀대걸레로 바닥 청소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다. 유족 및 동료 근로자에 따르면, 근로자는 흡연과음주는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망하기 두 달 전에 아버지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것 외에 가족력은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는 사망 당시 키가 156cm, 체중이 60kg 였으며, 체질량지수는 약 24.7kg/m2로 과체중이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만37세가 되던 2020년 6월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근로자는 2019년 6월 21일 □에 입사하여 약 1년 동안 △사업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직업적 신체 활동, 극한 온도,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교대근무, 염소가스 등이 알려져 있다.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식수인원의 증가로 인해 장기간 업무가 과중 및 청소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재해 당일에 바닥청소 및 방역 소독업무가 평소에 비하여 과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끝.